

경기용품의 공인 및 검정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사단법인 대한수중·핀수영협회(이하 '본 협회'라 칭함)가 주최, 주관하는 각종 경기대회에서 사용되는 경기용품(시설 및 용구포함, 이하같음)과 본 협회가 관장하는 모든 스킨스쿠버 다이버가 사용하는 각종 수중스포츠(시설 및 용구 포함, 이하같음)에 관한 공인 및 검정방법을 제도화하여, 국산수중경기·스포츠용품의 품질향상을 기하고, 일부 해외수입용품을 사용할 경우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한 기준에 따라 공인함으로써 경기력향상과 안전사고예방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이 규정을 제정·시행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중경기·스포츠용품과 본 협회가 인정하는 해외 수입수중경기·스포츠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수중경기·스포츠용품 공인 및 검정위원회

제3조(설치 및 명칭)

1. 본 협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 제7장(각종위원회)의 규정에 의거한 각종 위원회로서 “수중경기·스포츠용품 공인 및 검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함)를 구성·운영한다.

제4조(조직)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① 위원장 : 본 협회 회장이 임원중에서 지명한다.
- ② 부위원장 :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 : 수중 협회이사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중에서 지명된다.

제5조(임기) ①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연임가능하다. 임기는 선임위원의 임기에 준한다.

② 본 협회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각 위원에 대하여 위·해촉할 수 있다.

제6조(운영)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괄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회는 본 협회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4.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5. 위원장 및 위원이 계류중인 심의대상자가 되거나 직접 이해 관련이 있는 경우에 심의 또는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6. 위원의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위원이 연속 3회이상 불참한 때에 위원장은 본 협회에게 과학위원의 교체 요청을 할 수 있다.

제3장 수중스포츠·경기용품의 공인 및 검정

제7조(대상품목)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 및 검정을 받는 수중스포츠, 경기용품은 아래와 같다.

1. 국산수중경기용품 : 핀, 모노핀, 스노클, 물안경, 수영복, 공기통, 호흡기
2. 국산수중스포츠용품 : 핀, 물안경, 스노클, 호흡기, 부력조절기, 공기통, 수압계
3. 해외수중경기용품 : 1항과 같음
4. 해외수중스포츠용품 : 2항과 같음
5. 기타 : 다이빙 훈련용 수영장 시설 및 핀수영 경기장

제8조(공인기준) 위원회는 아래 기준을 검토하여 공인 및 검정을 결정토록 한다.

1. 대상용품이 세계수중연맹의 기준에 합당하고 세계 및 아시아선수권 대회에서 자주 사용될 수 있는가
2. 대상용품이 국가공인 검정기관의 검정·검사를 법규대로 받았는가
3. 대상용품이 국내외적으로 안전성과 신뢰도가 보장되어 있는가
4. 대상용품이 국내외적으로 많이 보급되고 있는가
5. 해외수입 대상용품이 국산화 촉진에 역행하는 불요불급한 것이 아닌가
6. 해외수입 대상용품이 사치·과소비조장을 한다는 여론의 대상이 아닌가
7. 기타 이 규정 제1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인가

제9조(유효기간) 모든 수중경기·스포츠용품의 공인유효기간은 공인 및 검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그 기간을 가감할 수 있다.

제10조(공인절차)

1. 본협회는 매년 2월 말일 이전에 대상 업체로부터 문서로서 공인 및 검정신청서(본협회 소정양식)를 제출토록 한다. 다만 타 공인 및 검정을 받은 업체의 공인 및 검정연기신청서는 타 공인의 유효기간 만료 1개월까지 제출토록 한다.

2.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구비되어야 한다.

- (1) 업체의 최근 3년간의 사업실적(생산, 판매, 수출입)
- (2) 협력업체 현황
- (3) 법인 등기부 등본
- (4) 납세증명서 사본
- (5) 공인 및 검정료
- (6) 기타 본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본 협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공인 및 검정의 가부결정을 내려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토록 한다.

4. 공인 및 검정이 결정된 용품에 대하여는 그 생산(또는 무역)업체에 공인인증과 검정필증을 발급하고, 개개 용품에는 “공인필” 스티커를 부착토록 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용품생산단계에서 “공인필”을 인쇄하게할 수 있다.

제11조(공인료)

1. 본협회가 공인 및 검정한 모든 수중경기·스포츠용품에 대하여는 당해 생산(무역)업체에서 공인과 동시에 공인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본 협회가 공인료를 책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국제관행, 국내의 각 경기단체의 공인료

의 형평 및 대상 경기·스포츠용품의 판매(수출)실적 등 제반 여건을 종합 검토하여 본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준용할 수 없을 때와 해석이 불분명한 때에는 본 협회

정관 및 제 규정 또는 이사회가 결정한 바에 따른다.

제13조(시행일) 1. 이 규정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이사회 승인으로 개정 시행한다. (2006.1.10)

3. 본 규정은 2007. 3. 14일 개정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0. 6. 1일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각 용품 및 시설규정을 따른다. (공기통 검사규정, 핀수영경기장시설규정)